

제31회 노동권익포럼(2023-4)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특성과 노동권익 보호방안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15:00~17:00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 요>

- 제 목 :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특성과 노동권의 보호방안
- 일 시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15:00~17:00
- 장 소 :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프로그램 진행>

시 간(120분)	주 요 내 용
15:00~15:10 (10분)	개회사 및 인사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5:10~16:10 (60분)	[발표1]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일자리 특성과 변화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서울시 이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주수인 (연구자)
16:10~16:40 (30분)	[토론1] 신승훈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 [토론2]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16:40~17:00 (20분)	질의응답, 종합토론
17:00	폐회

〈목 차〉

[발표1]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일자리 특성과 변화 7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서울시 이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21

주수인 (연구자)

[토론1]

외국인주민 상담동향으로 보는 노동상담 유형과 노동권익 강화방안 35

신승훈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

[토론2]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노동권익 보호 43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발표 1〉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일자리 특성과 변화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제31회 노동권익포럼]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일자리 특성과 변화

김진하

2023. 11. 2.



※ 이 발제문은 김진하·황민영(2021,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를 요약 정리한 것임.

CONTENTS

- 01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와 지원 정책
- 02 서울시 이주노동자 현황과 특성
- 03 정책 제언

CHAPTER 01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와 지원 정책

CHAPTER

01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와 지원 정책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와 지원 정책은 단순기능인력에 집중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대표적 도입 제도는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와 '사이언스·골드카드 제도'

단순기능인력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에 근거하여 허가

-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는 내국인 노동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허가되는 비자는 단순기능인력자격인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 일반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취득
 - 동포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인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

전문인력

사이언스·골드카드 운영

- 해외 우수인재의 발굴과 취업 알선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
- 전문인력의 취업자격 취득 시 사증 취득과정의 편의나 출입국 관리상의 혜택 제공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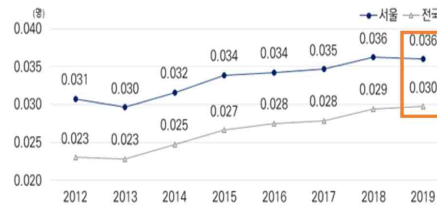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도입 규모는 전국 수요에 기반한 결정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결정

- 노동시장 통계와 경제 침체 상황을 반영하여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를 산출
 -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는 노동시장 내의 부족인력 중 외국인력 규모와 출구에 따른 대체 수요 고려
 -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 변화와 내국인 취업가능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현황은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

- 2019년 내국인 1인당 외국인 수는 서울이 전국보다 1.2배 많은 상황임에도 지역별 규모는 고려 제외
- 각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가 다르므로 지역별 시장 현황과 요구 반영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이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그 외 산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확충 요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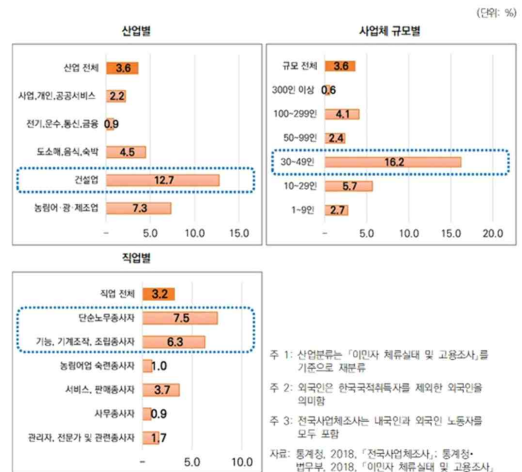
주 1: 조사대상 이민자와 내국인은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 인구임
 주 2: 2012~2016년에는 지역별 귀화허가자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시계열 연결과 내국인 1인당 외국인 수 계산을 위해 2017~2019년 외국인 상주인구에서 귀화허가자를 제외함
 자료: 통계청 법무부, 각 연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2019년 서울시 및 전국 내국인 1인당 외국인 상주인구

서울시는 숙련 수준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주노동자 의존도 높아

서울시는 인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칭이 고착화하고 특히, 저숙련 부문의 인력확보 어려움

-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전국보다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고, 직능수준이 낮은 저숙련 부문에서 인력 확보 어려움
- 임금수준이 낮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노동집약적 부문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이주노동자의 활용이 높은 편
 - 산업별로는 건설업, 광·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평균 이상의 의존도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49인의 중소기업에서 의존도 높음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에 높은 의존



2018년 서울시 산업별·규모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앙-지방정부 간 연계체계 부재

서울시는 주로 이주노동자의 생활안정,
취업활동, 복지 등을 지원

-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 사업
 - 서울시시립 외국인 노동자센터는 2020년 기준 총 6개소를 운영
 - 생활·노무·법률 분야의 상담,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 같은 교육 자원과 의료 지원을 제공
- 외국인의 투자와 창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도 운영
-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
 -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이 대상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이 목표

중앙정부-서울시 간 이주노동자 유입량, 특성 등
정보 주고받는 체계 없는 실정

- 이주노동자 규모나 제도와 관련해 지역의 상황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지역 차원에서 특정 기능의 이주노동자 쏠림 문제 해결, 지원 정책의 사전 계획 등에 한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회 통합 및 전문인력 유입 프로그램 운영,
일부는 지방정부에 역할 부여

고숙련 전문기술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에 역할을 부여

- 세계 주요 국가는 이주노동자의 구성과 내·외국인 노동시장 마찰 등의 상황이 각기 다름에도 대부분 고숙련 전문기술직을 위한 이민자 프로그램을 운영 (우리가 단순인력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차이)
- 중앙-지방정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역분산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수립

- 이주노동자의 도심 집중으로 기반시설이 과부하되고 노동시장에서 자국민과의 마찰이 심화하여 최근에는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자심사와 자격기준 강화
- 특정분야의 고숙련 기술자와 스타트업 전문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에 근거하여 이주노동자 유입량과 유치정책 등 조율

독일 베를린주
난민의 노동시장 접근 완화,
사회 통합정책 시행

- 2020년 3월부터 전문가 이주민법을 운영하여 비-EU 국가들의 전문인력 유입 장벽 낮춤
- 지방정부는 통합과 이주 상원 부서를 두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고려한 정책을 구상

이탈리아 라치오주
합법 고용 분야 및 자국민력 부족
분야의 유입량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 로마가 입지한 라치오주는 지역 내 이주노동자의 분포, 고용, 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
- 라치오주는 이주노동자의 유입량을 모니터링하고 전망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기관을 설립
 - 이주노동자의 유입량 결정을 위한 유입 수요 한도 의견서를 작성해 중앙정부에 제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회 통합 및 전문인력 유입 프로그램 운영, 일부는 지방정부에 역할 부여

대만 타이베이시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법적 문제 등 직접 관리

-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산업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중급 기술인재와 전문인재를 유치
 - 내국인 고용 촉진과 이주노동자 관리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고용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
- 대만 타이베이시는 지역정부의 노동부 아래에 외국인 및 장애인 노동사무소를 두고, 중앙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지역 내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위해 가족과 이주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지원하고 직업 안정화를 도모
 - 지역 내 이주노동자의 입국과 고용 상황, 각종 법적 문제, 노사 분쟁 등을 직접 관리

일본 도도부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결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

- 일본은 숙련 외국인의 유치를 위해 새로운 기술 분야의 이주노동자 재류자격을 신설하고, 유입 규모와 지역 쏠림 방지 방안을 지방정부와 논의
 - 2019년 4월 시행된 새로운 외국 인재 수입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 기능 이주노동자가 대도시권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
 - 일본의 지방정부는 도도부현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특정 기능 이주노동자의 특정 지역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
- 지역 실정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노동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9

CHAPTER 02

서울시 이주노동자 현황과 특성

2019년 통계청 전국 외국인 취업자 86만 3천명

서울시 거주 외국인 경찰인구는 18만 3천명 (전국의 20.1%),

2019년 법무부 전국 체류 취업자 89만 9천명

서울시 외국인 취업자는 16만 5천명 (전국의 19.2%)

- 법무부 전국 체류 취업자 89만 9천명 (합법 50.9만명, 불법 33만명)은 통계청과 유사한 수준

- 연평균 증가율은 최하인데 거주 규모 경인 다음으로는 커... 외국인도 서울, 수도권 쏠림

(단위: 명)

구분	계	합법	불법
총체류자	2,524,656	2,134,375	390,281
외국인 노동자	899,304	509,023	390,281
비취업비자 입국자	1,995,431	1,625,352	330,079
유학·연수(D-2, D-4-1, D-4-7)	181,945	159,878	22,067
재외동포(F-4)	464,152	462,738	1,414
영주(F-5)	153,291	153,291	0
결혼이민자(F-6)	131,034	127,884	3,150
그 외	1,025,009	721,761	303,248
취업비자 입국자	569,225	509,023	60,202
단순기능인력	522,644	466,913	55,731
소계	522,644	466,913	55,731
비전문취업(E-9)	276,755	230,633	46,122
전문취업(E-10)	17,603	11,397	6,206
기술연수(D-3)	1,964	656	1,308
빙분취업(H-2)	226,322	224,227	2,095
전문인력	46,581	42,110	4,471
소계	46,581	42,110	4,471
단기취업(C-4)	1,645	1,284	361
고수(E-1)	2,187	2,186	1
희망(E-2)	13,910	13,875	35
연구(E-3)	3,132	3,130	2
기술지도(E-4)	220	218	2
전문취업(E-5)	624	617	7
예술공연(E-6)	3,549	2,136	1,413
특성활동(E-7)	21,314	18,664	2,650

(단위: 천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725.4 (100)	696.8 (100)	773.6 (100)	847.5 (100)	869.6 (100)	868.7 (100)	929.1 (100)	913.6 (100)	3.3%
서울	182.5 (25.2)	166.2 (23.7)	178.0 (23.0)	191.3 (22.6)	186.7 (21.5)	185.3 (21.3)	200.3 (21.6)	183.3 (20.1)	0.0%
경기	286.5 (39.5)	279.4 (40.2)	321.9 (41.6)	342.5 (40.4)	367.5 (42.3)	373.1 (42.9)	396.2 (42.6)	394.7 (43.2)	4.6%
부산	256.5 (35.4)	251.2 (36.1)	273.7 (35.4)	313.7 (37.0)	315.3 (36.3)	310.3 (35.7)	333.6 (35.9)	335.6 (36.7)	3.9%
대구	90.9 (12.5)	88.7 (12.8)	94.9 (12.3)	107.3 (12.7)	108.7 (12.5)	99.3 (11.4)	97.9 (10.5)	93.5 (10.2)	0.4%
대전	65.7 (9.1)	66.4 (9.5)	72.3 (9.3)	84.8 (10.0)	84.0 (9.7)	88.4 (10.2)	98.9 (10.6)	101.8 (11.1)	6.4%
광주	46.0 (6.3)	42.7 (6.1)	49.2 (6.4)	55.2 (6.5)	52.3 (6.0)	51.0 (5.9)	58.5 (6.3)	57.7 (6.3)	3.2%
울주	40.3 (5.6)	39.3 (5.7)	42.8 (5.5)	47.8 (5.6)	49.4 (5.7)	50.1 (5.8)	52.3 (5.6)	56.5 (6.2)	4.9%
강원	13.6 (1.9)	14.0 (2.0)	14.4 (1.9)	18.7 (2.2)	20.9 (2.4)	21.5 (2.5)	26.0 (2.8)	26.1 (2.9)	9.8%

주 1: 외국인 노동자 수 = 취업비자 입국자(합법) + 취업비자 입국자(불법) + 비취업비자 입국자(합법)
 주 2: 이 자료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착상기준 및 기준일자가 달라 수치가 다름에 유의
 자료: 법무부, 20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주 1: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데,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한국국적취득자를 제외한 외국인 중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
 주 2: 2012~2019년 자료는 2017년 이후 자료와 시계열 연계를 위해 상수인구를 기준으로 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주 3: 괄호 안은 각 연도의 전국(100%) 대비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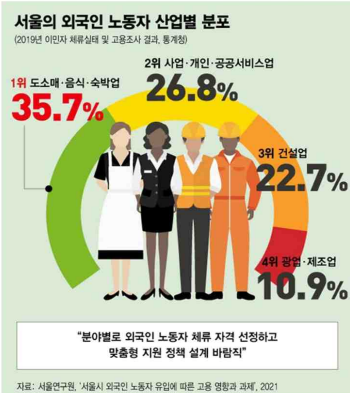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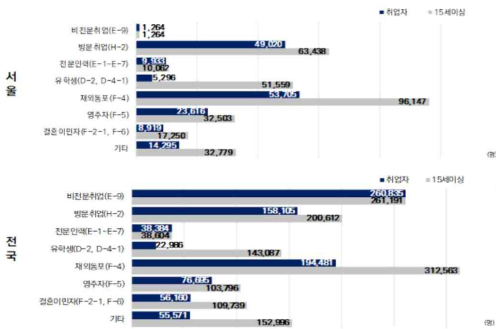
2019년 전국의 합법여부별 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 수

2012~2019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시도별 분포

서울·전국 모두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지만, 서울은 도음숙, 단순노무자 종사 비중 커

- 서울은 취업자격 중 방문취업(H-2) 4만 9천명, 비전문취업(E-9) 1천명, 전문인력(E-1~7) 1만명
- 전국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

- [서울] 한국계 중국인(서울 이주노동자 중 70%), 성비 유사, 50대, 5인 미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판매종사자
- [전국] 한국계 중국인(전국 이주노동자 중 41%), 남성 68%, 20~30대, 30인 미만, 광제조업,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주 1: 유학생은 D-2 비자와 D-4-1 비자뿐만 아니라 D-4-7 비지도 포함
 주 2: 재외동포, 영주자, 유학생도 단순노무, 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을 허용하므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 포함
 자료: 통계청 법무부, 20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19년 서울시 및 전국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비율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 2021'

단순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전문인력은 E-1~E-7으로 구분
서울 단순기능인력은 한국계 중국인, 50대, 남성, 건설업, 일용직 vs. 전국은 제조업 상용직

- 서울 단순기능인력 중 경찰인구는 5만 4천명
 - 이 중 취업자는 5만명, 실업자는 4천명으로 고용률 77.7%, 실업률 6.6%
 - 전국 단순기능인력은 고용률 90.7, 실업률 2.4%
- 서울 전문인력 중 경찰인구 1만명, 취업자 1만명으로 고용률 98.7%
 - 전국 전문인력의 고용률 9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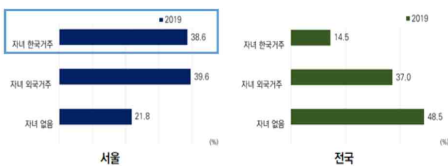
구분	연도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단순기능인력	서울 2019	64,702	54,493	50,284	4,209	10,209	77.7	6.6
	서울 2012	106,468	93,231	87,079	6,152	13,237	81.8	7.7
	전국 2019	461,803	429,835	418,940	10,894	31,968	90.7	2.4
전문인력	서울 2019	10,062	9,933	9,933	-	129	98.7	-
	서울 2012	12,839	12,691	12,691	-	148	98.9	-
	전국 2019	38,604	38,394	38,394	-	210	99.4	-
전국	2012	40,882	40,632	40,632	-	250	99.4	-

주 1: 전문인력은 활동범위와 세류 기간을 사전에 성하고 세류자격이 주어지며, 복귀가 불투명한 6개월 이상의 장기 휴직인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므로 실업자 수가 보고되지 않음
주 2: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법무부, 각 연도, 「이민자 세류실태 및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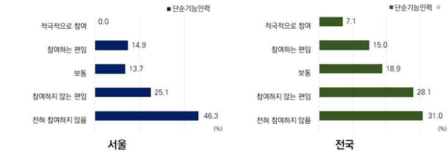
서울 및 전국 숙련수준별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 상태 현황

서울시 단순기능인력은 자녀의 한국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비율 작아
서울 전문인력은 연령 낮아 자녀 없으나, 유자녀 시 자녀교육 참여 비율 100%

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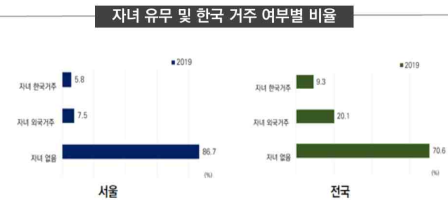


주: 단순기능인력 중 취업자만 포함
자료: 통계청 법무부, 2019, 「이민자 세류실태 및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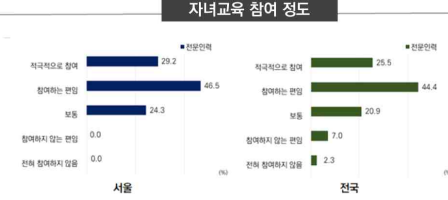


주 1: 단순기능인력 중 취업자만 포함
주 2: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응답
자료: 통계청 법무부, 2019, 「이민자 세류실태 및 고용조사」.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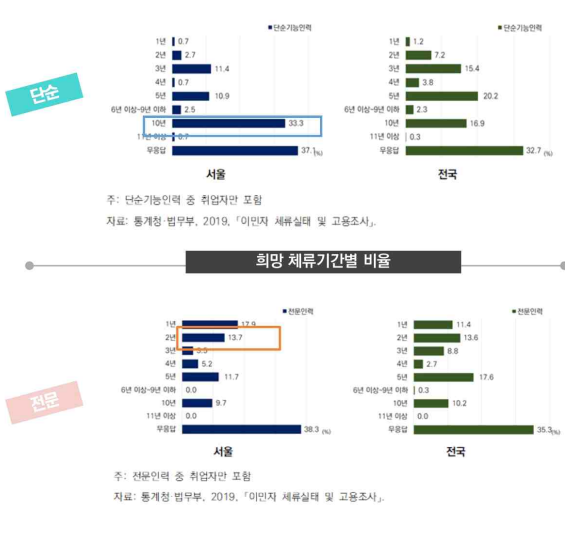


주: 전문인력 중 취업자만 포함
자료: 통계청 법무부, 2019, 「이민자 세류실태 및 고용조사」.



주 1: 전문인력 중 취업자만 포함
주 2: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응답
자료: 통계청 법무부, 2019, 「이민자 세류실태 및 고용조사」.

서울 단순가능인력(한국계 중국인, 50대, 여성은 도음숙 단순노무/남성은 도음숙 단순노무)은 장기체류 희망 전문인력은 1년 희망 비율이 가장 높고, 2-5년 희망 응답자 전국보다 적어



❖ 서울시 이주노동자(전체)의 생활 어려움

1.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서울-전국: 40.4% 약간만족, 35~39% 매우만족
2.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 서울: 1순위 경제적 어려움, 2-3순위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차이
 - 전국: 1-2순위 언어문제, 3순위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차이
3. 필요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
 - 서울: 1순위 한국어 교육, 2순위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
 - 전국: 1순위 한국어 교육, 2순위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CHAPTER 03

정책제언

이주노동자 도입제도는 단순인력 규모 유지/확대에 중점
서울시 단순인력은 국적, 산업, 직업, 고용형태, 연령이 전국보다 제한적, 지원책도 제한적

이주노동자 도입정책, 크게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사이언스-골드카드제

- 단순기능인력 자격인 비전문취업(F-9)과 방문취업(H-2) 비자는 각각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근거로 취업 자격
- 사이언스/골드카드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 도입지원 제도
- 서울시는 주로 외국인의 생활안정, 취업활동, 복지 등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하지만 중앙정부와 이주노동자 유입량, 특성 등 정보 주고받는 연계체계 없어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독일 베를린 주, 이탈리아 라치오주는 지방정부도 이주노동자 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체적인 역할 가능

서울 이주노동자 중 한국계 중국인 70%, 단순기능인력은 한국계 중국인 97%, 둘 다 50대 비중 높아

- 서울 이주노동자는 한국계 중국인 비중 70%, 남성이 조금 더 많지만 성비 유사, 여성은 전국보다 비중 커, 50대, 도음숙,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판매종사자 큰 비중
- 숙련수준별로 구분하면 서울 단순기능인력 97%가 한국계 중국인, 50대, 남성, 건설업, 10년 이상 장기체류 희망, 자녀 한국 거주
- 서울시 단순기능인력은 전국에 비해 고용불안정성이 큼: 고연령 건설업 혹은 도음숙,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 판매직
- 서울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이 커서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하나 서울시 정책은 언어, 의료, 취업활동 지원에 한정

이주노동자 고용, 내국인과 대체관계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서 효과 뚜렷'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해 두가지 실증분석 시행 (지역은 서울, 산업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과 전문인력 다수 업종으로 구분)
- 1)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관계 분석
- 2)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고 노동집약적 사업활동이 주되어 이주노동자 활용할수록 인력난 해소, 기업 수익 증가
- 서울시 전문인력 다수 업종은 기업이 전문인력 도입 위해 고비용 지불한 데 비해 수입창출까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단기간 체류 희망) 오히려 수익성 감소

규모결정권을 통해 서울시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숙련수준별 정책 설계와 활용 방안 마련

주요 과제

지방정부의 규모결정권을 마련하여 지역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

- 지역 단위의 이주노동자의 규모,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황 점검
-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규모 결정에 대한 권리를 지방정부에게도 부여하도록 제도 개편

추진 전략

분야별로 중점 단순기능인력 체류자격선정, 체류자격별로 맞춤형 정책 설계

-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알선을 통한 매칭
- 산업별, 상관별, 기업 규모별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을 선정하고 체류자격에 맞춰 지원정책 설계

신산업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고학력 전문인력의 활용 모색

-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서 인력 활용을 위한 총괄자로 서울시의 역할 변화 모색
- 전문인력의 유입과 활용을 위해 고숙련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특정
- 전문인력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역 단위 이주노동자 관련 통계 구축 및 현황 점검

이주노동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모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의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부문별 인력에 대한 지역 정보와 의견 반영 필요

- 최근 세계 주요 국가는 고숙련 전문기술직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지역별 이주노동자 수요와 내·이주노동자의 마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 부여
 - 후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중앙정부와 협약에 근거하여 이주노동자 유입량과 유치정책 등을 수립

서울시 차원에서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단위 이주노동자의 규모,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황을 점검

- 이탈리아 라치오주와 같이 지역 내 이주노동자 유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반에 걸쳐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
- DB 정보를 축적하면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이주노동자 인력 활용 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이 가능
 - 이렇게 확보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주노동자 수요 한도에 대한 의견 개진

지역 단위 이주노동자 관련 통계 구축 및 현황 점검

지방정부에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결정권 부여

이주노동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모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의 노동시장 상황 파악하고, 필요 부문별 인력에 대한 지역 정보와 의견 반영

- 최근 세계 주요 국가는 고숙련 전문기술직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지역별 이주노동자 수요와 내·이주노동자의 마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 부여
 - 후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중앙정부와 협약에 근거하여 이주노동자 유입량과 유치정책 등을 수립

서울시 차원에서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단위 이주노동자의 규모,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황을 점검

- 이탈리아 라치오주와 같이 지역 내 이주노동자 유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반에 걸쳐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
- DB 정보를 축적하면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이주노동자 인력 활용 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이 가능
 - 이렇게 확보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주노동자 수요 한도에 대한 의견 개진

서울시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계획과 의견을 전달

- 이주노동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서울시의 노동시장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수요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보다 이주노동자를 원활히 유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일자리 매칭

각 체류자격에 맞춰 지원정책 디자인

서울시는 여전히 단순기능인력의 미충원율이 전국보다 높다

- 건설업과 제조업, 10~4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이주노동자 의존도 높음
- 서울에서는 단순기능인력의 공급 현상으로 단순기능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이 어려움
 - 단순기능인력(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로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서비스·판매종사자로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우위

중앙정부 단순기능인력 규모 결정하지만, 일자리 매칭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 지역별로 고르지 못한 수급 상황으로 인해 서울시가 단순기능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 내국인 노동자의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의존성이 높고, 이주노동자를 활용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이 단순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설정

- 서울시 산업은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에 집중
- 단순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취업활동, 복지 등을 지원

산업별, 상권별, 기업 규모별로 초점 맞춰야 할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선정

- 서울에는 밀도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지
-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력 활용을 위한 총괄자 역할 모색

숙련 전문인력 활용 분야 특정

전문인력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고학력 전문인력인 유치 위해 서울시의 인력 수급 및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정부의 외국인 도입제도는 고학력 전문인력 규모 결정이나 관리체계가 없는 실정
- 서울시의 경우 대졸 이상인 전문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이주노동자 중에서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
- 대졸 이상 고학력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중요 인력

신산업/4차산업혁명 선도 핵심산업 육성 위해 고숙련 전문 인력 유입...기술경쟁력 강화

-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고숙련 인력 도입
- 강동관 외(2010)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이유는 국내에 없는 연구인력 확보,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혁신 등을 통해 제품의 시장경쟁력과 매출 강화 목적

전문인력 유치 위해 임금보다 주거제공, 불편 해소하는 생활환경 중요

- 서울시 이주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1순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한국어 교육, 2순위로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

현행 이주노동자 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전문인력은 단순기능인력과 다르게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 서울시는 주거비용이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비와 진료비 등 생활물가 높은 상황
- 지원 대상은 전문인력까지 확대하되 대상별로 맞춤 지원 필요
- 맞춤형 지원 정책과 관련 체계는 전문인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단순기능인력에도 적용 가능



감사합니다.

〈발표 2〉

서울지역 이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주 수 인
(연구자)



서울시 이주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주수인



INDEX

1. 이주노동 개념과 범주
2. 서울시 이민자 분포와 특징
3. 주요 분야별 이주노동활용실태와 쟁점
4. 정책방향은?

01 이민자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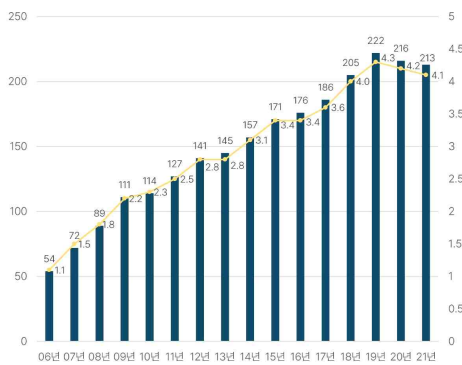
한국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정주형 이민자	장기체류자격으로 대부분 취업활동에 별다른 제약 없음 거주 (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취업 목적 이민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 허용 분야에 일하고 있음 전문인력(E-1~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지역특화 (F-2-R) 등
취업 이외 목적이지만 취업활동가능한 이민자	취업 이외 목적이지만 일부 취업활동가능한 이민자 기술연수(D-3), 유학(D-2, D-4), 구직(D-10), 기타(G-1) 등
미등록 이민자	체류기간 초과자(사업장 이탈 포함), 체류기간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02 이민자 추이 및 '이주노동' 범위의 확장

○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외국인 공금 확대 → 비취업 체류자격 이민자 증가

외국인 주민 증가추이(2006 - 2021)



(상주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비중 추이 : 15세 이상, 단위:%)

	2015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15-'22)	비중변화 ('15-'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8	
재외동포	18.7	23.6	25.2	28.5	28.8	8.2	10.0
기타	9.9	11.6	12.8	13.8	13.3	6.2	3.4
유학생	6.4	10.8	10.3	10.8	12.5	11.9	6.0
영주	8.3	7.8	8.6	9.6	10.0	4.5	1.7
결혼이민	9.6	8.3	9.1	9.5	9.4	1.6	-0.1
비전문취업	22.4	19.7	18.9	16.3	16.1	-2.9	-6.3
방문취업	21.3	15.2	12.1	9.2	7.4	-12.5	-13.9
전문인력	3.5	2.9	3.0	3.0	3.2	0.5	-0.3

자료: 통계청,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03 이민자의 수도권 집중

○ 이민자의 수도권 집중화 : 전체 이민자의 59.8%가 수도권 거주

○ 탈 서울 수도권 거주 : 직장-주거지 분리

- 이민자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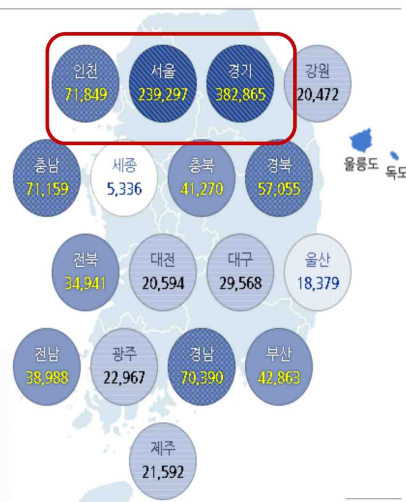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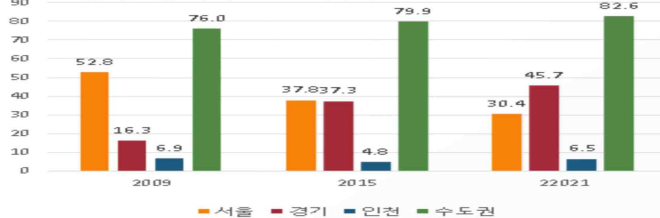
서울 : '10) 29.8% → ('21) 20.0%
경기 : '10) 29.7% → ('21) 33.5%

- 경주형 이민자 : F-4, F-2, F-5, F-6, 국적취득자

서울 : '10) 31.2% → ('21) 24.7%
경기 : '10) 26.6% → ('21) 38.4%

○ 외국국적 동포(F-4) 중 중국국적

- 체류자수 ('15) 239천 명 → ('21) 354천 명
- 수도권 거주 비중 ('15) 79.9% → ('21) 82.6%
- 서울 거주 비중 ('15) 37.8% → ('21) 30.4%



자료: 통계청 2022 등록 외국인 현황

04 서울시 이민자 집중지수 상위 20%지역

- 이민자 집중지수 개념 : 이민자 집중지수가 1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내국인 비중 대비 전체 이민자에서 차지하는 해당 지역의 이민자 비중이 같음을 의미하며 집중지수가 1보다 적은 경우는 이민자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1보다 클 경우 이민자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2010년 상위 20% 지역		2015년 상위 20% 지역		2019년 상위 20% 지역	
	지역명	지수	지역명	지수	지역명	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2.88	종로구	3.04	종로구	2.14
	중구	3.39	중구	2.70	중구	2.46
	용산구	3.00	용산구	2.25	용산구	2.30
	성동구	1.52				
	광진구	1.82	광진구	1.63	광진구	1.55
	동대문구	1.78	동대문구	1.40	동대문구	1.56
	서대문구	1.53			서대문구	1.33
	마포구	1.23				
	구로구	3.49	구로구	3.16	구로구	2.95
	금천구	4.00	금천구	3.49	금천구	3.07
	영등포구	4.77	영등포구	4.18	영등포구	3.29
	동작구	1.42	동작구	1.29		
	관악구	1.87	관악구	1.66	관악구	1.39

자료:이규용, 이종과, 이해춘, 정기선, 주수인(2021), 지역노동시장과 이민, 한국노동연구원

05 이민자 밀집지역의 변화 : 영등포구와 부천시

◎ 영등포구



◎ 주거, 물가 등으로 인해 이민자의 거주 지역이 서울시 밖으로 이동
- 그러나 소비, 생활, 구인활동 등은 여전히 서울의 밀집지역 활용
- 연세이주, 가족초청에 따른 밀집화
- 내국인과 비슷한 행동 패턴

◎ 이민자의 주거비와 체류지의 분리 확대와 정책주체 고민 필요
- 주민정책 vs 일자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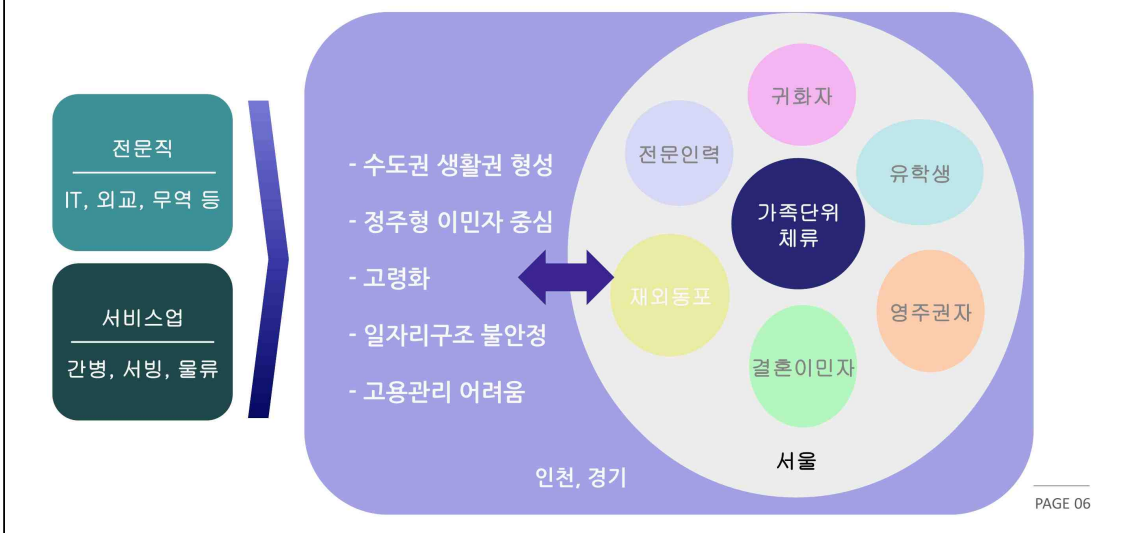
◎ 부천시



	2010		2015		2019	
	이민자 집중지수	외국국적 동포	이민자 집중지수	외국국적 동포	이민자 집중지수	외국국적 동포
영등포구	4.77	1,315	4.21	13,616	3.28	16,171
부천시	1.03	455	1.16	5,625	1.30	11,671

자료:이규용, 이종과, 이해춘, 정기선, 주수인(2021), 지역노동시장과 이민, 한국노동연구원

06 서울시 이민자 특징



07 국내 외국국적 동포의 연령별 변화

- 동포의 고령화
- 동포 주요 취업분야의 인력부족 심화
 - 동포의 주요 취업분야: 서비스업(음식업, 돌봄서비스업 등), 건설업 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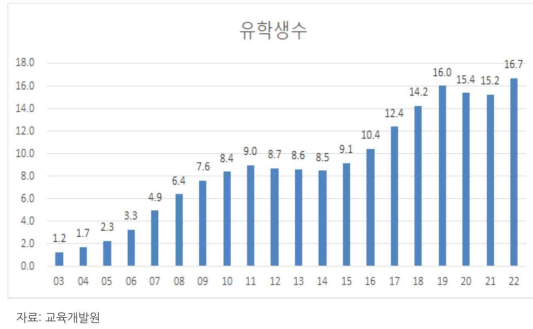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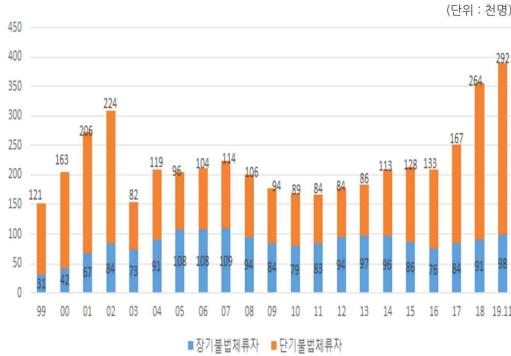
		전체	남자	여자
2013	합계	100	100	100
	15세 미만	1.3	1.3	1.3
	15-29세	14.1	14	14.3
	30-59세	70.4	71.6	69.1
	60세 이상	14.1	13.1	15.2
2021	합계	100	100	100
	15세 미만	3.1	3	3.3
	15-29세	5.1	5	5.2
	30-59세	64.4	68.2	60.1
	60세 이상	27.4	23.8	31.4

자료: 통계청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08 미등록 이민자와 유학생 추이

- 미등록이민자 : 429,114명 (23.8 법무부)
- 쉽게 고용가능하고 업무가 능숙한 외국인 선호
-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강화

- 유학생 : 197,234명 (23.7 법무부)
- 한국문화와 언어가 유창한 외국인 선호
- 고령화된 동포의 일자리로 유입



자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월보)」를 이용하여 작성. 이규용 외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42 발췌

09 돌봄노동시장: 가사, 간병 등 (서울 천호동, 대림동, 경기 의정부 사례)

◎ (현행) 재외동포(F-4) ·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 취업가능, 비전문인력(E-9)은 '23년 말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체계 개편 ⇒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외국인 간병인력으로 환자돌봄시장 이분화
- 간병인은 '가사 사용자'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적용 X
- 요양병원: 24시간 중노동, 산재 등 적용, 낮은 임금, 불법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초보자와 숙련자 동일임금

◎ (쟁점) 1) 노인돌봄 및 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 되고 있으나 노인돌봄의 시설화와 병원화 확대가 바람직한가?

-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자격문제, 고용관리, 근로자로서의 권익 등 보다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
- 2) 사업방식: 가사근로자법 적용 및 인증기관을 통한 공급방식에 대한 고민과 향후 직접고용 및 재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 준비 필요
- 3) 일자리 질 개선,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비용완화의 3박자 해결 → 정부(서울시)의 정책개입 필요

< 간 병 인 자 격 조 건 >
 “신체 건강, 용모 단정하신 분”
 → 간병인 자격증, 훈련인증, 경력 존재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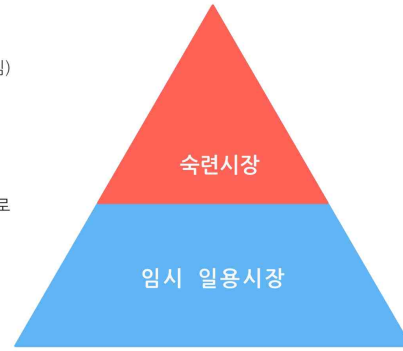
국적	일당
한국	10만~11만원
중국동포	8만~9만원 공동간병 7만 5천 원 일대일 간병 8만~9만원
고려인	7만 5천~8만원
한족	7만~7만 2천 원
아시아인	5만~6만 5천 원



이규용 외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01 발췌

10 건설 노동시장 : 숙련공과 비숙련공 (서울 남구로)

- 건설업은 숙련시장과 임시 일용 시장으로 구분
 - 숙련시장 : 국내 인력의 고령화로 숙련단절 → 동포 중심으로 숙련노동시장 구축
→ 최근 미등록 외국인 중심으로 숙련시장 형성
 - 임시 일용 시장 : 일일노동, 남구로역 (내국인/동포/한족 / 기타 외국인으로 나누어짐)
 - 건설 노동공급 : 고용허가제 = 토목, 동포인력= 건설 전반
- ◎ 불법 외국인 고용(특히 철근 콘크리트 공사), 산재 위험
- 정연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2020년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1.39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사망만인율 0.77보다 높음
- 아파트 골조공사 지상층은 80% 이상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
- 미등록 외국인 중 범죄, 마약 등 우려
- ◎ 건설인력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활용 수요 증가
- 외국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숙련도 제고, 생산성 증가
- 일용직 노동시장의 불법문제 대처 필요 : 권익보호, 내국인 일자리, 생산물 품질 제고 등



11 물류노동시장 : 단순노무의 일일시장 (김포, 이천, 광주 등 통근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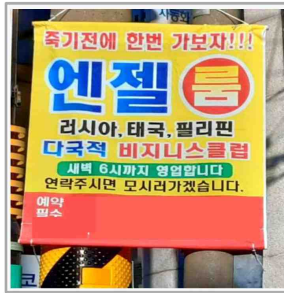
- 대기업들로 근로조건을 향상 시킬 필요
 - 인력의 계절성(명절 등) 심함
 - 외국인(H-2)허용 전까지 임금이 높아 대학생이나 실직자 등 내국인의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활용
 - 지방물류센터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지역 편차 심함
- ◎ 방문취업 (H-2)의 상하차 취업을 허용하여 고령인, 중국동포가 취업하고 있으며 23년 말 항공 수하물, 택배 및 물류업 상하차에 E-9 허용 논의 중
- 타 산업에 비해 물류업의 E-9은 E-7-4로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이며 단순 숙달을 어떻게 전문인력으로 평가할 것인가?
- E-9의 아웃소싱이 가능해질 것을 염두 할 때 관리방안
- 상하차로 한정하여 취업 허용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산재 위험 많음

롯데택배	쿠팡	CJ

12 음성적 노동시장 : 마사지, 가라오케 등 (서울 등대문, 노랑진, 용산 등)

- 처음부터 알고 들어오는 경우 있지만, 거짓광고 속기도 하고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왔다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꾀에 빠져 유입되기도 함
- 유흥 분야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국적 다양화
- 트랜스젠더, 여성, 게이 등 성정체성도 다양화
- 미등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여권을 뺏기고 성매매를 강요(연합뉴스, 2016. 8. 29)당하거나 감금되는 등 인신매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연예, 공연, 방송, 스포츠(E-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음성적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많음
 - 성매매 등 불법이지만 공연 등으로 조작하여 외국인 고용 및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 많음



13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인 구직 방식 : 온라인, 지인

□ 국내취업지원 사이트 외국인 구인 현황

모집 요강	우대 사항	복리 후생	기타 정보	추천 장소
모집요강				
모집직종	제조 단순 종사원			
관련직종	-			
직종키워드	-			
직무내용	자동차 부품 생산 생산팀 - 프레스 생산인원(프로그래서비) 경력 및 신입 환영 외국인 가능(인도네시아 / 우크라이나 / 러시아, 등)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파견근로 비 희망			
기간	2명 모집 (현재 18명 지원) 지원합계			
< W사 구인 정보 >				

채용정보 (1/12)

♥ (주)더이엠템
CIS 해외 영업 담당자(외국인 채용)

장규혁 (인원관리) 정계우관 (신입모집) 대홍(4년) (매장사가능)

마감일 - 03/19(일) | D-42

급여 - 면접 후 결정

지역 - 서울 구로구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09:30-06:30

필수사항 - **러시아어 가능자**

우대사항 - 해당직무 인턴경력 희망

최저임금제에 대한 알림
*본인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내용이 우선합니다.

< S사 구인 정보 >

□ 비공식 취업공유 시장 활성화 / 비검증 정보 난립

안녕하세요
비건 00

▶ Looking for female assembly workers!
 Only foreigners living in Korea
 Work: Simple assembly of mechanical parts
 Model: 2 people
 Address: Changnyeong-gun, Gyeonggi-province-dong(24243)도 용인
 Time: 8:30 am - 7:30 pm
 Closed every Sunday
 No night work.
 Salary: 35,000 on cost of assembly.
 No assembly/leave after 3 months. 1 assembly/15work
 Salary: 3000-4000 assemble a day
 Now working people can assemble 4500-4800 a day
 Room: 100,00won / 1 person (2 people live together) clean
 (Korea), TV, laundry machine, Airconditioner)
 No visa fee
 We can see before start working
 1-2days can apartment(room free)
 Korea's labor law changes from May. If you looking for a simple and fastest way to earn money, contact me
 I know much money you make depends on how many you assemble.
 How to apply:
 Message: kakaotalk ID : happy6117
 (010-8002-8117)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just text to me.

○ 외국인 지원비 및 급여 안내 Aug (8월) (월)
 1 | 110 만 원 (1명/1명) | 월 1명 (1명) | 110 만 원 (60 만 원 + 50 만 원) | 1명
 2 | 2명
 3 | 3명
 4 | 4명
 5 | 5명
 6 | 6명
 7 | 7명
 8 | 8명
 9 | 9명
 10 | 10명
 11 | 11명
 12 | 12명
 13 | 13명
 14 | 14명
 15 | 15명
 16 | 16명
 17 | 17명
 18 | 18명
 19 | 19명
 20 | 20명
 21 | 21명
 22 | 22명
 23 | 23명
 24 | 24명
 25 | 25명
 26 | 26명
 27 | 27명
 28 | 28명
 29 | 29명
 30 | 30명
 31 | 31명
 32 | 32명
 33 | 33명
 34 | 34명
 35 | 35명
 36 | 36명
 37 | 37명
 38 | 38명
 39 | 39명
 40 | 40명
 41 | 41명
 42 | 42명
 43 | 43명
 44 | 44명
 45 | 45명
 46 | 46명
 47 | 47명
 48 | 48명
 49 | 49명
 50 | 50명
 51 | 51명
 52 | 52명
 53 | 53명
 54 | 54명
 55 | 55명
 56 | 56명
 57 | 57명
 58 | 58명
 59 | 59명
 60 | 60명
 61 | 61명
 62 | 62명
 63 | 63명
 64 | 64명
 65 | 65명
 66 | 66명
 67 | 67명
 68 | 68명
 69 | 69명
 70 | 70명
 71 | 71명
 72 | 72명
 73 | 73명
 74 | 74명
 75 | 75명
 76 | 76명
 77 | 77명
 78 | 78명
 79 | 79명
 80 | 80명
 81 | 81명
 82 | 82명
 83 | 83명
 84 | 84명
 85 | 85명
 86 | 86명
 87 | 87명
 88 | 88명
 89 | 89명
 90 | 90명
 91 | 91명
 92 | 92명
 93 | 93명
 94 | 94명
 95 | 95명
 96 | 96명
 97 | 97명
 98 | 98명
 99 | 99명
 100 | 100명
 101 | 101명
 102 | 102명
 103 | 103명
 104 | 104명
 105 | 105명
 106 | 106명
 107 | 107명
 108 | 108명
 109 | 109명
 110 | 110명
 111 | 111명
 112 | 112명
 113 | 113명
 114 | 114명
 115 | 115명
 116 | 116명
 117 | 117명
 118 | 118명
 119 | 119명
 120 | 120명
 121 | 121명
 122 | 122명
 123 | 123명
 124 | 124명
 125 | 125명
 126 | 126명
 127 | 127명
 128 | 128명
 129 | 129명
 130 | 130명
 131 | 131명
 132 | 132명
 133 | 133명
 134 | 134명
 135 | 135명
 136 | 136명
 137 | 137명
 138 | 138명
 139 | 139명
 140 | 140명
 141 | 141명
 142 | 142명
 143 | 143명
 144 | 144명
 145 | 145명
 146 | 146명
 147 | 147명
 148 | 148명
 149 | 149명
 150 | 150명
 151 | 151명
 152 | 152명
 153 | 153명
 154 | 154명
 155 | 155명
 156 | 156명
 157 | 157명
 158 | 158명
 159 | 159명
 160 | 160명
 161 | 161명
 162 | 162명
 163 | 163명
 164 | 164명
 165 | 165명
 166 | 166명
 167 | 167명
 168 | 168명
 169 | 169명
 170 | 170명
 171 | 171명
 172 | 172명
 173 | 173명
 174 | 174명
 175 | 175명
 176 | 176명
 177 | 177명
 178 | 178명
 179 | 179명
 180 | 180명
 181 | 181명
 182 | 182명
 183 | 183명
 184 | 184명
 185 | 185명
 186 | 186명
 187 | 187명
 188 | 188명
 189 | 189명
 190 | 190명
 191 | 191명
 192 | 192명
 193 | 193명
 194 | 194명
 195 | 195명
 196 | 196명
 197 | 197명
 198 | 198명
 199 | 199명
 200 | 200명
 201 | 201명
 202 | 202명
 203 | 203명
 204 | 204명
 205 | 205명
 206 | 206명
 207 | 207명
 208 | 208명
 209 | 209명
 210 | 210명
 211 | 211명
 212 | 212명
 213 | 213명
 214 | 214명
 215 | 215명
 216 | 216명
 217 | 217명
 218 | 218명
 219 | 219명
 220 | 220명
 221 | 221명
 222 | 222명
 223 | 223명
 224 | 224명
 225 | 225명
 226 | 226명
 227 | 227명
 228 | 228명
 229 | 229명
 230 | 230명
 231 | 231명
 232 | 232명
 233 | 233명
 234 | 234명
 235 | 235명
 236 | 236명
 237 | 237명
 238 | 238명
 239 | 239명
 240 | 240명
 241 | 241명
 242 | 242명
 243 | 243명
 244 | 244명
 245 | 245명
 246 | 246명
 247 | 247명
 248 | 248명
 249 | 249명
 250 | 250명
 251 | 251명
 252 | 252명
 253 | 253명
 254 | 254명
 255 | 255명
 256 | 256명
 257 | 257명
 258 | 258명
 259 | 259명
 260 | 260명
 261 | 261명
 262 | 262명
 263 | 263명
 264 | 264명
 265 | 265명
 266 | 266명
 267 | 267명
 268 | 268명
 269 | 269명
 270 | 270명
 271 | 271명
 272 | 272명
 273 | 273명
 274 | 274명
 275 | 275명
 276 | 276명
 277 | 277명
 278 | 278명
 279 | 279명
 280 | 280명
 281 | 281명
 282 | 282명
 283 | 283명
 284 | 284명
 285 | 285명
 286 | 286명
 287 | 287명
 288 | 288명
 289 | 289명
 290 | 290명
 291 | 291명
 292 | 292명
 293 | 293명
 294 | 294명
 295 | 295명
 296 | 296명
 297 | 297명
 298 | 298명
 299 | 299명
 300 | 300명
 301 | 301명
 302 | 302명
 303 | 303명
 304 | 304명
 305 | 305명
 306 | 306명
 307 | 307명
 308 | 308명
 309 | 309명
 310 | 310명
 311 | 311명
 312 | 312명
 313 | 313명
 314 | 314명
 315 | 315명
 316 | 316명
 317 | 317명
 318 | 318명
 319 | 319명
 320 | 320명
 321 | 321명
 322 | 322명
 323 | 323명
 324 | 324명
 325 | 325명
 326 | 326명
 327 | 327명
 328 | 328명
 329 | 329명
 330 | 330명
 331 | 331명
 332 | 332명
 333 | 333명
 334 | 334명
 335 | 335명
 336 | 336명
 337 | 337명
 338 | 338명
 339 | 339명
 340 | 340명
 341 | 341명
 342 | 342명
 343 | 343명
 344 | 344명
 345 | 345명
 346 | 346명
 347 | 347명
 348 | 348명
 349 | 349명
 350 | 350명
 351 | 351명
 352 | 352명
 353 | 353명
 354 | 354명
 355 | 355명
 356 | 356명
 357 | 357명
 358 | 358명
 359 | 359명
 360 | 360명
 361 | 361명
 362 | 362명
 363 | 363명
 364 | 364명
 365 | 365명
 366 | 366명
 367 | 367명
 368 | 368명
 369 | 369명
 370 | 370명
 371 | 371명
 372 | 372명
 373 | 373명
 374 | 374명
 375 | 375명
 376 | 376명
 377 | 377명
 378 | 378명
 379 | 379명
 380 | 380명
 381 | 381명
 382 | 382명
 383 | 383명
 384 | 384명
 385 | 385명
 386 | 386명
 387 | 387명
 388 | 388명
 389 | 389명
 390 | 390명
 391 | 391명
 392 | 392명
 393 | 393명
 394 | 394명
 395 | 395명
 396 | 396명
 397 | 397명
 398 | 398명
 399 | 399명
 400 | 400명
 401 | 401명
 402 | 402명
 403 | 403명
 404 | 404명
 405 | 405명
 406 | 406명
 407 | 407명
 408 | 408명
 409 | 409명
 410 | 410명
 411 | 411명
 412 | 412명
 413 | 413명
 414 | 414명
 415 | 415명
 416 | 416명
 417 | 417명
 418 | 418명
 419 | 419명
 420 | 420명
 421 | 421명
 422 | 422명
 423 | 423명
 424 | 424명
 425 | 425명
 426 | 426명
 427 | 427명
 428 | 428명
 429 | 429명
 430 | 430명
 431 | 431명
 432 | 432명
 433 | 433명
 434 | 434명
 435 | 435명
 436 | 436명
 437 | 437명
 438 | 438명
 439 | 439명
 440 | 440명
 441 | 441명
 442 | 442명
 443 | 443명
 444 | 444명
 445 | 445명
 446 | 446명
 447 | 447명
 448 | 448명
 449 | 449명
 450 | 450명
 451 | 451명
 452 | 452명
 453 | 453명
 454 | 454명
 455 | 455명
 456 | 456명
 457 | 457명
 458 | 458명
 459 | 459명
 460 | 460명
 461 | 461명
 462 | 462명
 463 | 463명
 464 | 464명
 465 | 465명
 466 | 466명
 467 | 467명
 468 | 468명
 469 | 469명
 470 | 470명
 471 | 471명
 472 | 472명
 473 | 473명
 474 | 474명
 475 | 475명
 476 | 476명
 477 | 477명
 478 | 478명
 479 | 479명
 480 | 480명
 481 | 481명
 482 | 482명
 483 | 483명
 484 | 484명
 485 | 485명
 486 | 486명
 487 | 487명
 488 | 488명
 489 | 489명
 490 | 490명
 491 | 491명
 492 | 492명
 493 | 493명
 494 | 494명
 495 | 495명
 496 | 496명
 497 | 497명
 498 | 498명
 499 | 499명
 500 | 500명
 501 | 501명
 502 | 502명
 503 | 503명
 504 | 504명
 505 | 505명
 506 | 506명
 507 | 507명
 508 | 508명
 509 | 509명
 510 | 510명
 511 | 511명
 512 | 512명
 513 | 513명
 514 | 514명
 515 | 515명
 516 | 516명
 517 | 517명
 518 | 518명
 519 | 519명
 520 | 520명
 521 | 521명
 522 | 522명
 523 | 523명
 524 | 524명
 525 | 525명
 526 | 526명
 527 | 527명
 528 | 528명
 529 | 529명
 530 | 530명
 531 | 531명
 532 | 532명
 533 | 533명
 534 | 534명
 535 | 535명
 536 | 536명
 537 | 537명
 538 | 538명
 539 | 539명
 540 | 540명
 541 | 541명
 542 | 542명
 543 | 543명
 544 | 544명
 545 | 545명
 546 | 546명
 547 | 547명
 548 | 548명
 549 | 549명
 550 | 550명
 551 | 551명
 552 | 552명
 553 | 553명
 554 | 554명
 555 | 555명
 556 | 556명
 557 | 557명
 558 | 558명
 559 | 559명
 560 | 560명
 561 | 561명
 562 | 562명
 563 | 563명
 564 | 564명
 565 | 565명
 566 | 566명
 567 | 567명
 568 | 568명
 569 | 569명
 570 | 570명
 571 | 571명
 572 | 572명
 573 | 573명
 574 | 574명
 575 | 575명
 576 | 576명
 577 | 577명
 578 | 578명
 579 | 579명
 580 | 580명
 581 | 581명
 582 | 582명
 583 | 583명
 584 | 584명
 585 | 585명
 586 | 586명
 587 | 587명
 588 | 588명
 589 | 589명
 590 | 590명
 591 | 591명
 592 | 592명
 593 | 593명
 594 | 594명
 595 | 595명
 596 | 596명
 597 | 597명
 598 | 598명
 599 | 599명
 600 | 600명
 601 | 601명
 602 | 602명
 603 | 603명
 604 | 604명
 605 | 605명
 606 | 606명
 607 | 607명
 608 | 608명
 609 | 609명
 610 | 610명
 611 | 611명
 612 | 612명
 613 | 613명
 614 | 614명
 615 | 615명
 616 | 616명
 617 | 617명
 618 | 618명
 619 | 619명
 620 | 620명
 621 | 621명
 622 | 622명
 623 | 623명
 624 | 624명
 625 | 625명
 626 | 626명
 627 | 627명
 628 | 628명
 629 | 629명
 630 | 630명
 631 | 631명
 632 | 632명
 633 | 633명
 634 | 634명
 635 | 635명
 636 | 636명
 637 | 637명
 638 | 638명
 639 | 639명
 640 | 640명
 641 | 641명
 642 | 642명
 643 | 643명
 644 | 644명
 645 | 645명
 646 | 646명
 647 | 647명
 648 | 648명
 649 | 649명
 650 | 650명
 651 | 651명
 652 | 652명
 653 | 653명
 654 | 654명
 655 | 655명
 656 | 656명
 657 | 657명
 658 | 658명
 659 | 659명
 660 | 660명
 661 | 661명
 662 | 662명
 663 | 663명
 664 | 664명
 665 | 665명
 666 | 666명
 667 | 667명
 668 | 668명
 669 | 669명
 670 | 670명
 671 | 671명
 672 | 672명
 673 | 673명
 674 | 674명
 675 | 675명
 676 | 676명
 677 | 677명
 678 | 678명
 679 | 679명
 680 | 680명
 681 | 681명
 682 | 682명
 683 | 683명
 684 | 684명
 685 | 685명
 686 | 686명
 687 | 687명
 688 | 688명
 689 | 689명
 690 | 690명
 691 | 691명
 692 | 692명
 693 | 693명
 694 | 694명
 695 | 695명
 696 | 696명
 697 | 697명
 698 | 698명
 699 | 699명
 700 | 700명
 701 | 701명
 702 | 702명
 703 | 703명
 704 | 704명
 705 | 705명
 706 | 706명
 707 | 707명
 708 | 708명
 709 | 709명
 710 | 710명
 711 | 711명
 712 | 712명
 713 | 713명
 714 | 714명
 715 | 715명
 716 | 716명
 717 | 717명
 718 | 718명
 719 | 719명
 720 | 720명
 721 | 721명
 722 | 722명
 723 | 723명
 724 | 724명
 725 | 725명
 726 | 726명
 727 | 727명
 728 | 728명
 729 | 729명
 730 | 730명
 731 | 731명
 732 | 732명

14 외국인 체류지원 및 채용서비스 부재로 시장교란·사회경제적 비용 증대

- 외국인 불법 노동시장 성행(브로커 난립, 인권침해, 사업주 피해)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제대로 된 인력확보 곤란, 필요한 취업처 발굴 어려움 증폭
- 외국인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관리 지원서비스시장은 형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



- 분산된 외국인 체류지원 서비스 및 사업주 고용관리 시스템 부재
- 직업훈련, 경력형성 지원체계 거의 부재



- 정 부**
-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유형별 부처별 서비스 제공
 -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 실태 파악 미비
 - 인력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과 불법체류자 탈레마
- 고용주**
- 외국인 체류자격마다 다른 고용 조건
 - 외국인 구인 과정의 복잡한 절차
 - 외국인 구직자 정보 부족
- 외국인**
- 외국인유학생의 국내노동시장 진입 거의 실패
 - 동료 외국인 국적, 가족사 등 회사의 고용조건 알기 어려움
 - 경력동한 체류자격 변경 등 정보 부재

15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

< 체류자격 >

- 합법 (비취업비자)
- 합법 (취업비자)
- 비합법
- 합법

< 취업자격 >

- 비합법
- 비합법 (허용업종 외, 사업장 이탈 등)
- 비합법
- 합법

< 취업과정 >



16 당면과제 1 : 노동공급 감소 대응

- ◎ 유학생의 낮은 취업성과 : '16년 유학생 입국자(20,427명) 중 E-7 취업자는 2.9%(596명) ('21.10월 기준)
 - 유치전략 중심의 유학생 정책으로 유학생 인적자원 개발이나 유학생 역량강화는 상대적으로 미흡

□ 이주노동정책 -> 외국인력 정책이 아닌 고용서비스 지원 정책 접근 필요

- 노동권 보호, 인권사각지대 해소
- 근로환경 개선, 일자리 질 제고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생산품 품질향상, 서비스 질 개선

□ 인구감소 대응

-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인구정책의 병행 요구
 - 중장기 전략과 현재의 정책간 비정합성 문제 해결 필요
- 인구유입정책 :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여부는 불확실
 - 이민정책이 인구변동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를 야기하는 구조적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민정책도 성공

17 당면과제 2 : 이민자 정주화 대응

- ◎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려할 때 이민자도 이중구조에 편입
 - 낮은 질의 일자리, 장기적으로 소득불안정 등 취약계층 가능성
 - 이민자 2세의 교육에도 영향

- ◎ 동포, 영주권자, 국적취득자, 이주배경아동 등 정주형 이민자의 노동, 복지, 사회적 지위, 소득, 빈곤, 지역사회 통합 등 체계적인 정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단순한 외국인 유입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적 접근통해 이민자 경쟁력 강화, 이민사회 수용기반 구축

- 이민자 인적자본 투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대응
 -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강화
 - 지역주민정책으로써 이민자 지원정책 접근 : 이민자 선별정책이 아닌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복지, 소득, 교육정책 접근

*** 국적기준에 의한 지원정책의 한계는 있으나 보편적인 주민정책 시각에서 접근

***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민자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18 당면과제 3 : 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 이민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 및 인프라 구축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감수 불가피 : 자원 마련
-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발굴
 - 서울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정책수요 : 소득, 일자리, 주거, 복지, 이주배경 아동, 가족 등
- 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 서울시 인구정책, 노동시장 정책, 복지정책과 이민정책 연계
 - 지역주민센터와 이민자 자원서비스 기관간 연계 협력
 - 국가별 커뮤니티와 밀집지역 이민자간 협력 필요



〈토론 1〉

외국인주민 상담동향으로 보는 노동상담 유형과 노동권의 강화방안

신 승 훈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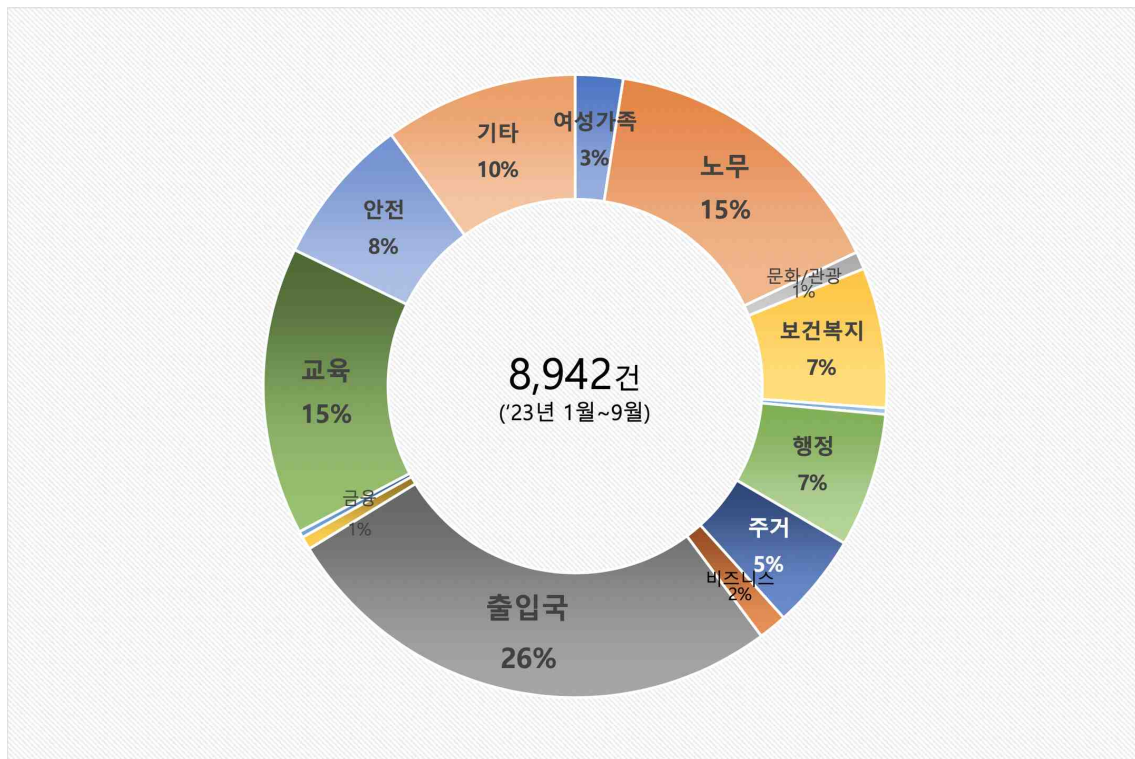
외국인주민 상담동향으로 보는 노동상담 유형과 권익보호 강화방안

신승훈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

□ 다양한 체류자격 외국인주민의 상담수요 증가

2023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상담은 작년 동기 대비 16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그중 변호사와 노무사가 제공하는 전문상담은 약 3.8배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의 거점센터가 되어 다국어 생활 상담과 전문상담 수요가 센터로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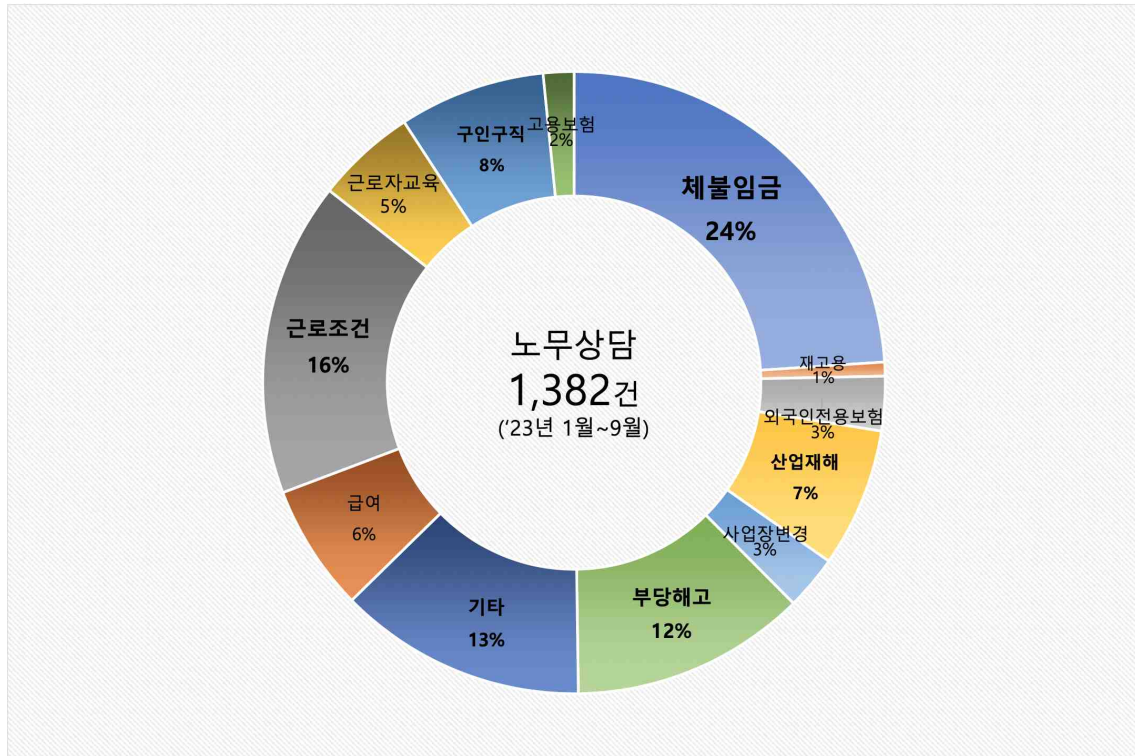
(표1)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분야 분포

외국인주민의 가장 큰 고충상담은 출입국·체류 분야로 전체 상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2년 5월부터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에 개소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개소 전에도 출입국·체류 분야 상담은 전체의 22%, 노무상담은 15%로 외국인주민 상담의 기본은 출입국·체류 분야가 된지 오래이다.

과거에는 노동 관련 상담 수요가 가장 컸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주민의 증가, 다양한 체

류자격 외국인주민의 이용 증가에 따라 주거, 행정, 복지, 안전(민형사, 교통사고 등) 등 내국인 수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금이 생계와 밀접하다면 출입국문제는 생애와 연관된 문제라 볼 수 있다.

전체상담 중 노무상담은 15%를 차지하나 노무상담의 수요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무상담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분야 별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표2)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노무상담 세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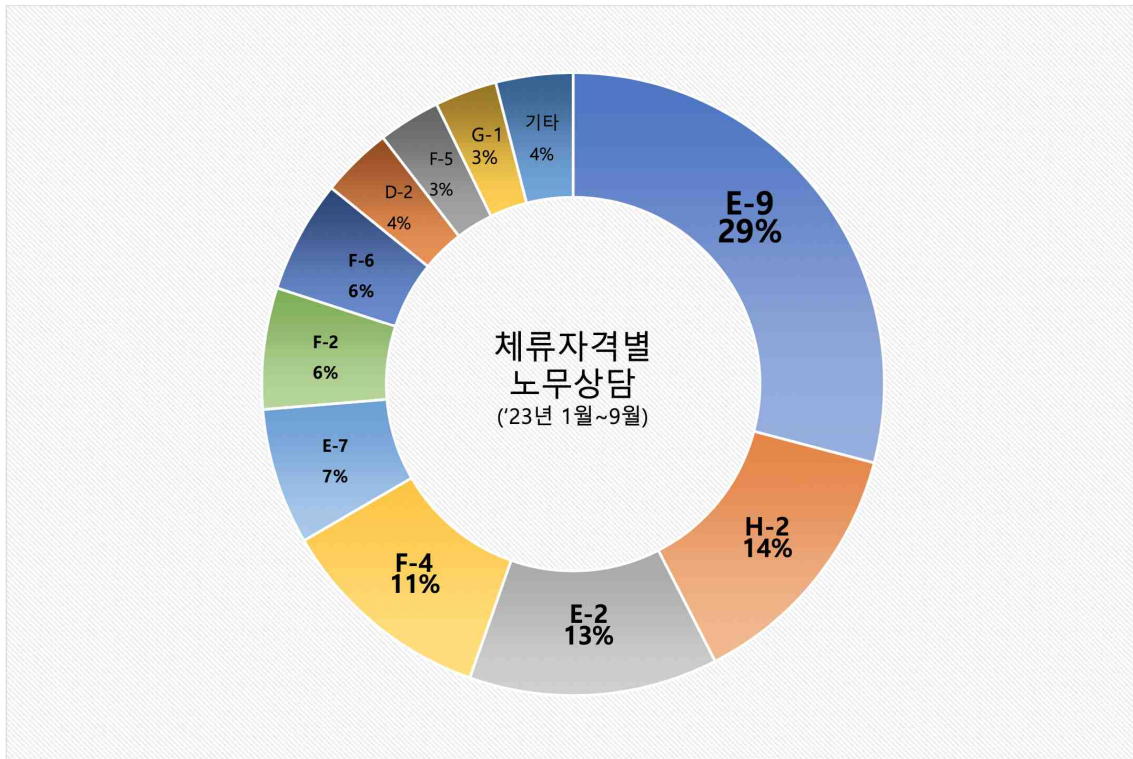
노무상담 중 1/4은 체불임금 상담이다. 과거에는 단순노무인력인 E-9, H-2의 외국인주민 이용률이 높아 노무상담의 절반이 체불임금인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단순노무인력과 더불어 전문인력의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노동상담도 분야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전문인력이나 안정적인 장기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도 구직정보의 부족으로 구인 구직 관련 상담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무상담을 이용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표3).

상담시스템상 체류자격이 확인되는 상담 건만으로 분류하였다.

노무상담을 가장 많이 이용한 체류자격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전용보험, 재고용 등 고용허가제에 특화된 상담은 적음에도 여전히 임금체불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하였다. 지리적인 특성상 중국동포(H-2, F-4)의 상담수요가 기존에도 많았으

나, 올해부터는 특히 E-2(회화지도), E-7(특정활동)과 같은 전문자격 소지자의 상담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상담의 수요증가와 영어상담의 상시 제공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표3) 노무분야 상담 이용자의 체류자격별 분류

체류자격별로 노무관련 고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전문인력은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산업재해 등의 비중이 높다면, 전문인력은 근로조건(임금수준, 계약내용), 징계와 해고, 연차휴가, 상여금, 직장내 괴롭힘 등 내국인과 비슷한 유형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임금체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E-7, E-2 자격 외국인도 임금 체불 시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뚜렷한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내국인 등료와의 차별,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은 전문자격 소지 외국인주민도 예외는 아니다.

□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노동상담의 영역은?

노동상담의 68%는 다국어 상담사의 상담으로 고충이 해소되며, 전문상담으로 연결되는 상담은 약 32%로 집계된다. 전문상담 시에 다국어상담사는 통역뿐 아니라 전문상담사의 법

률적인 영역 밖인 체류, 행정, 복지 등 상담과 연계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자칫 고충 해소에 집중하여 다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센터의 노동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상담 이외에도 이메일과 SNS 등으로 유입되는 상담 신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징계·해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영어권 외국인 주민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상담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문제는 진정서 또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으나 언어적인 문제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출석 시 한국어가 미흡하여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국선노무인을 선임하여도 언어의 장벽으로 충분한 권리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센터의 상담사가 매번 출장 통역을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어디까지 지원해야 권익보호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기대와 욕구에는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춘 외국인주민은 센터가 아닌 시장의 전문가를 통해 유료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

다양한 노동분야의 상담은 상담사가 배우고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전문상담사에 제만 의존할 경우 다국어생활의 서비스는 향상될 수 없으므로 상담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은 모든 종사자가 인정하나 체계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향상시키는 책임은 대부분 각 기관의 몫이며,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사 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언) 외국인주민의 노동권의 실현을 위한 준비

○ 안정적인 다국어상담 제공

외국인주민의 상담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국어상담사가 필요하다. 제공하는 언어는 간헐적으로 운영해서는 효과가 매우 낮고 상시 제공되어야 수요가 증가 된다. 따라서 지원 기관은 운용언어를 늘리기보다 상시제공되는 언어를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상담사의 역량강화에 있어 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노동관련 온오프라인 과정을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생애주기별, 체류자격별 대응력 강화

노동상담은 내담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미래의 체류 계획까지 염두하여 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비전문인력은 점수제와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전문인력으로 바뀔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류자격으로 전문·비전문인력으로 구분 지어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비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 경계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전문인력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서비스(교육, 역량강화, 구인구직)도 고민할 때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전문인력 또는 안정적인 장기체류자격을 소지하였음에도 구직정보가 부족하여 단순노무에 머무는 경우이다. 고도화된 기능과 자격을 이미 보유한 국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 내국인 수준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 비대면·온라인 홍보 강화

앞서 다국어상담사의 역량강화가 단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 스스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외국인주민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지만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다국어로 제공하는 교육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다국어 콘텐츠가 많은 곳이 유튜브이다.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여행사나 행정사, 로펌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외국인주민에게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주민이 이러한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지원기관이 따라가기는 매우 버거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외국인지원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주민에게 유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구성과 제작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상담, 통번역,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업무를 상담사 한 명이 전담하여 왔다면 앞으로는 분업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을 통해 다국어 콘텐츠 제작(교육-종사자 및 외국인주민 대상, 홍보, 정보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교육은 코로나19 시기 공여지책으로 운영한 일시적인 대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방문 중심 상담과 교육을 대면서비스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비대면 서비스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토론 2〉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노동권의 보호

신 태 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서울지역 이주노동 실태와 노동권의 보호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1. 서울인구 감소와 외국인주민 증가

- 서울인구는 2012년 1,019만명에서 2016년 992만명으로, 처음으로 천만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943만명임. 이러한 서울 인구 감소세는 부산, 대구, 전북 등 지역쇠퇴 위기를 겪는 지자체보다 빠른 편임(통계청, 2023.7.17.)
- 이에 반해, 경기, 인천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증가함. 이에 서울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즉,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역소멸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서울은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집값 급등 등으로 경기와 인천으로 인구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임¹⁾
- 서울인구는 감소한 반면,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증가함. 2006년 외국인주민 통계를 집계한 이후, 약 2.9배 증가하여, 2021년 기준 42만 6,743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다만, 주수인 연구자의 발표에서처럼 이주민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서울의 비중은 감소함. 즉,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는 경기, 인천이나 일자리와 생활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임. 2022년 서울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도 서울에서 생활하는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 수월해서’가 48.6%, ‘직장이 가까워서’ 27.5% 등으로, 내국인처럼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었음

2.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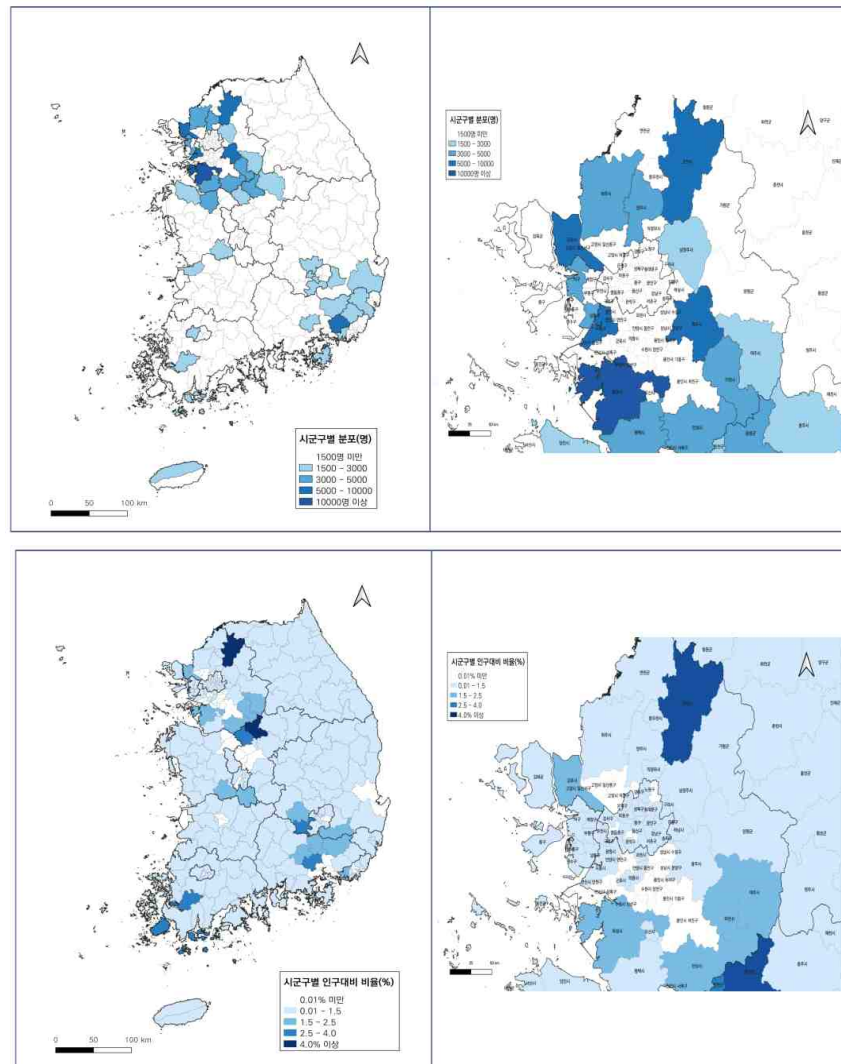
- 서울은 전국과 달리 정주형, 동포, 방문취업, 전문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서남권의 특정지역에 외국국적 동포 집중 거주하는 특징이 있음. 또한, 장기거주자와 중고령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삶의 고충은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특히 서울은 저숙련 분야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기에, 이들 분야에서 이주노동자 활용이 높은 편으로, 이들 사업장은 소규모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들이 많음. 이를테면 서울의 이주노동자 다수는 돌봄, 가사, 음식, 숙박, 건설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주로 종사함. 전문인력보다는 비전문인력,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저

1) 서울연구원이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순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인 하남, 화성, 김포, 시흥, 남양주 등으로 서울인구의 이주 패턴이 짙게 나타남. 자가와 아파트 거주 비율이 크게 늘고 주택 면적도 상승했던 점에서 직장 등 생업기반은 여전히 서울에 두고 있지만, 양질의 주거공간을 찾아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됨(머니투데이(2022.6.6.), 빛 바랜 천만도시, 서울인구, 950만명도 무너졌다)

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서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가입, 높은 산재 위험 등으로 내국인에 비해 노동권의 보호가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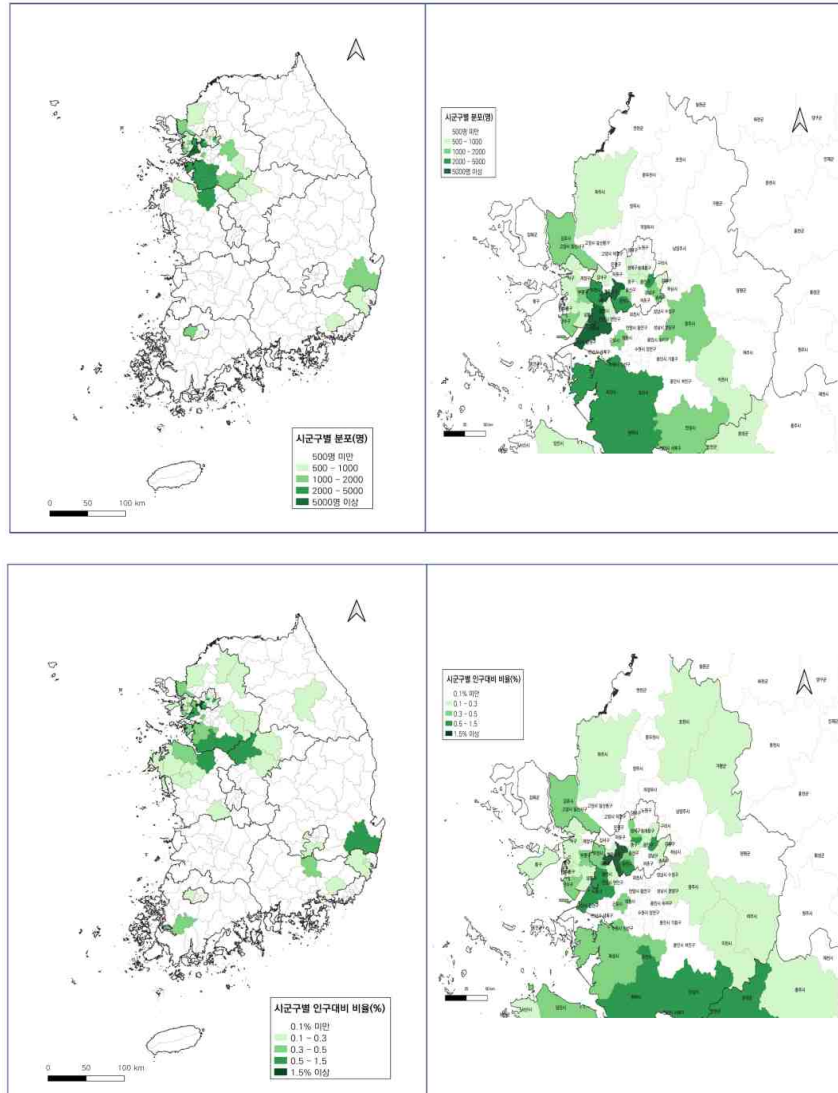
-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간에는 차이가 있음.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있는 비전문취업(E-9)은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함. 반면에, 방문취업(H-2)은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 화성 등 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음(유희연, 2023)

[그림 1]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자료 : 유희연(2023),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그림 1] 방문취업(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자료 : 유희연(2023),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 한편, 일자리가 많은 서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다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2022년 권익센터 실태조사에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합법적 체류자격자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였음
- 이주노동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돌봄, 가사, 음식업,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가사이주노동 도입은 시범운영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즉, 외국인력 도입 범위와 활동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보임

3.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 2022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제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35.0%에 불과하여 다수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음
-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일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들이 다수 있었으며, 다른 연구에서처럼 임금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였음
- 차별적 대우와 차별 경험도 높았음. 욕설 및 폭언 등 인격적 무시, 한국인과 차별, 사적일 일 지시 등을 경험하는 이주노동자가 다수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비율은 과반이 되지 않아 적극적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교육이 중요하지만, 노동교육 경험은 적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권리인식은 높지 않았음. 노동교육 경험은 적고 권리인식도 부족하여 노동문제 발생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 가장 문제가 심각한 서울지역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들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음. 설문조사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식당, 건설현장, 제조업 공장, 청소·배달·이사 등 매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다른 체류자격 이주노동자와 달리 주 6일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시간도 가장 길었음. 반면에 휴일은 가장 적었고, 임금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즉, 가장 장시간 일하면서 임금은 적은 집단임. 서면 근로계약 체결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1/5 수준에 불과했고, 반대로 임금체불 경험은 4배 가까이 되었음. 면접조사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신분으로 부당한 일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병원 이용시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함. 노동권의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에 종사하고, 외국인이라는 인적 특성, 그리고 비합법 체류자라는 특수성 등이 결합되어 가장 노동실태와 생활환경이 열악하였음

4.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음.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가 적을 뿐 취업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 서비스업에 대한 이주노동 도입과 시범운영이 검토되고,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정책적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함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센터 기능 강화 필요.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급증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시행함. 다만,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한 상담, 교육, 의료, 커뮤니티, 문화 서비스 제공방식임.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이주노동자 대상의 정책과제는 잘 드러나지 않음. 주로 노동상담, 노동교육 및 생활교육 무료진료소 운영 등이 있으나,

성과는 잘 확인되지 않음.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 권리 증진을 위해 이주노동자지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서울시는 독립적 정책 추진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지역 특성에 따른 이주노동자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확인함으로써 독자적인 정책설계와 집행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노동, 생활, 복지, 주거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주노동자 의제가 외국인 관련 서울시 거버넌스에서 적극 논의되어야 함

www.labors.or.kr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6925-4349, 상담번호 1661-2020

^^^
서울노동권익센터